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2. 10 선고 2021가단16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D

변 론 종 결 2021. 11. 12.

판 결 선 고 2021. 12. 10.

주 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20. 7.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D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와 2020. 11. 30. 접수 제1277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6. 7. 1.경 E 주식회사에서 A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D은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2020. 1. 2.경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차전2308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2. 28.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20. 5. 7. 확정되었다.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2021. 2. 23. 기준 6,239,949원이다.

다. D의 아버지인 망 F(이하 ‘망인’)은 2020. 7. 30.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상속지분 3/7)와 자녀 2인(D 외 1인, 각 상속지분 2/7)이 있다.

라.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0. 7. 30.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를 포함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 외에 달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없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카드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은 이로써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과 피고가 평생 함께 이룩한 재산이고, D이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D과 피고 사이에 2020. 7. 30.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정아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건물의표시

경기도 부천시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전유부분의건물의표시

건물의번호
 구 조 벽돌조
 면 적 43.74㎡ 지하실 18.66㎡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부천시 대 667㎡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15분의 1

끝.

별지 2

D의 채무 내역

- ① 기업은행 : 5,810 천원 (발생일자 2020.02.12.)
- ② : 5,159 천원 (발생일자 2020.04.06)
- ③ : 13,471 천원 (발생일자 2020.04.11.)
- ④ 은행 : 24,778 천원 (발생일자 2020.04.22.)
- ⑤ 경기신용보증재단 : 19,244 천원 (발생일자 2020.07.09)
- ⑥ 상기 합계 금액 : 68,462 천원

